#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8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서영교・신정훈・한병도

오영환 · 김민철 · 김승원

강민정 · 양정숙 · 이성만

민홍철 • 이원욱 • 송옥주

임호선 • 윤관석 • 김남국

이형석 · 최승재 · 오영후

김영배 • 박성준 의원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 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 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 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
	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
	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
	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